무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제정승인 관리2279호	1999.11.02.
개정(1차)	2004.01.18.
개정승인 관리1748호	2004.05.17.
개정(2차)	2006.03.15.
개정(3차)	2010.03.01.
개정(4차)	2011.04.25.
개정(5차)	2012.04.03.
개정(6차)	2013.02.18.
개정(7차)	2014.07.25.
전면개정(8차)	2020.11.17.
개정(9차)	2021.02.17.
개정(10차)	2022.10.13.
개정(11차)	2024.01.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무주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학교는 무주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우리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한로 43(읍내리 343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우리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년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한다.
③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학기)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우리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
2. 토요휴업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개교기념일(9월 3일)
7.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휴업일은 법정수업일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제)

①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우리 학교의 학급편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① 우리 학교의 학생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제4장 교과 ·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교과) 우리 학교 각 학년 교과는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출결상황 관리) 출결상황 관리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교육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는 매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따르며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근: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한 번도 없는 경우
2. 정근: 결석 1일 이내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3. 장기결석: 연속하여 5일 이상 결석한 경우
4. 단기결석: 연속하여 4일 이내 결석한 경우
5.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횟수: 연속하여 5회 이상 실시한 경우

② 우리학교교의 등・하교 시간, 수업시간은 매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체험학습 추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의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2.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보호조치 등)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3.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인정 가능 일수 내)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5. 관련 공문에 의해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6.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이 치료 기간 중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7.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의 숙려기간
8. 관련 공문에 따라 실시되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단, 사설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는 불가)

⑤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해서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타결석 등의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개인 교환학습)

①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권장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 개인 교환학습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③ 개인 교환학습에 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조(단체 교환학습)

①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권장 기간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단체 교환학습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③ 단체 교환학습에 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권장 기간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③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조(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① 학생 평가 및 학업성적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별도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③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7조(취학·입학)

① 우리 학교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교육장이 정한다.

② 우리 학교의 입학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취학 통보된 아동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입학할 학교 변경신청을 하고 학교장이 승낙한 아동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와 관련된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제1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재취학)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 대상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제9조2항2호)

제20조(전학)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⑥ 초등학교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⑦ 학교장 및 교육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⑧ 학교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① 학교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때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② 지능검사에 대한 객관성, 공인성 확보 및 검사지에 대한 학습효과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체 검사를 지양하고 개인비용으로 검사
2. 검사 기관 및 검사 시험지 등은 서로 달라야 함
3. 각 검사 결과 간의 기간 차는 학습효과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을 준수
4. 입학 이후에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만 인정

③ 경시・경연대회 3등 이내 입상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회규모, 주관・주최 기관, 수상등급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은 2학기 시작 전까지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생이 신청(1~2월 중, 신입생은 1학기 중)해야 한다.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우리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우리학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무주초등학교 소속 위원회 통합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⑧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7조(수업료 · 입학금)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우리학교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징수)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현장학습, 방과후 학교 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성금, 위문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④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장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9조(학생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0조(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인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3조(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우리학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무주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4조(학생자치활동)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35조(학생회 구성 및 운영)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 운영한다.

② 학생회 조직구성 및 운영은 학교생활규정에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0장 학칙개정절차

제36조(학교규칙 개정 절차)

① 학교규칙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하나 의결권은 없다.

③ 학칙 제·개정위원회는 교원위원 4명, 학부모위원 2명, 학생위원 5명으로 조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을 겸하여 운영한다.

④ 학칙 제·개정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2. 제정·개정안 발의
3. 학교구성원 의견수렴(교원, 학생, 학부모)
4. 시안 마련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6. 학교장 결재
7. 학교 홈페이지에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8. 학칙 안내 및 적용

제11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7조(학교자치의 목적)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학교자치의 원칙)

① 학교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학교자치기구)

① 우리학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④ 각 자치기구의 조직, 권한, 심의에 관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를 따른다.

제40조(교무회의)

① 우리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校務會議)를 둔다.

② 교무회의는 우리학교의 교직원(교사회, 직원회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무회의는 학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운영하며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교직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⑤ 학교장은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⑥ 교무회의의 기능 및 운영원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를 따르며 별도의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칙(2020.11.17.)

제1조(시행) 본 학교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17.)

제1조(시행) 본 학교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13.)

제1조(시행) 본 학교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8.)

제1조(시행) 본 학교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